

원일아파트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

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32-5번지 일원을 사업부지로 추진하였던 원일아파트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06월 04일

구 리 시 장

1. 조합개요

- 가. 조 합 명 : 원일아파트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구명회)
- 나. 사업시행구역 : 교문동 232-5번지 일원
- 다. 구 역 면 적 : 5,764.0m²
- 라. 조 합 원 수 : 80명

2. 조합설립인가 및 취소 현황

- 가. 조합설립 인가 : 2021.10.29.
- 나. 취소신청 내용 :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
- 다. 조합설립인가 취소 : 2025.06.04.

3.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유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2(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)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(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)제1항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,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.

※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균형개발과(별관4층, ☎ 031-550-830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